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 670호
------	--------

제출연월일 : 2000. 12. 21.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 이유

- 도로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적용 범위는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 주택 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2조)
- 다. 가로수는 관리청에서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함.
(안 제11조)
- 라. 가로수는 주간 등 상단부를 자르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받아 조치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가로수에 대하여 피해 등 훼손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바. 출향 인사 및 향우회 단체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수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심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사. 녹지 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 장소 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명예 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3. 참고 사항

- 근거법규 : 건축법 제32조(조례에서 정한 대지안의 조경),
도로법 제3조(도로의 가로수)
도로법 제64조·제67조(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도로법 제71조(의무자 부담)
- 도 산림52210-12191(2000.11.6) 시(군)조경시설관리조례 및 규칙제정 실시
- 입법예고결과 : 의견내용 없음

4. 본 문 : 덧붙임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녹지·가로수 및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공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 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청” (이하 “군수” 라 한다)이라 함은 산림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가로수 및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 라 함은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3. “건축주” 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가로수” 라 함은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도시 가로, 도로변, 해안, 강변 등 가로 주변에 조화있게 식재된 나무를 말한다.
5. “조경시설” 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 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제2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제4조(조경 시설의 관리) ①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무의 전지(剪枝)·전정(剪定)·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
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고 지주목 설치
3.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②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 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숙아베기, 가지치기 등 나무를 기르고 손질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기타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조경시설의 보호·유지) ①군수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건축물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군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기타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④관리책임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녹지·보호수 관리

제7조(나무 등의 보호)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가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에 있어 군수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조경수로서 가치있는 기존 수목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수의 지정) ①군수는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수목, 희귀수목,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 관리자의 의무) ①보호수의 관리자(소유자)는 당해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과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수의 관리책임자(소유자)는 보호수를 옮겨 심거나 또는 수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수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군수는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장 가로수의 식재·관리

제11조(가로수 식재 등) ①군수는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가로수는 기후 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한다.

③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

④가로수 심기는 현지 여건에 따라 1 내지 2열로 식재하되,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2열 이상 심기를 할 수 있다.

⑤가로수는 활착이 양호하면서, 가급적 꽃을 겸한 수종을 식재하며, 군수는 별도 노선별 계획 수종을 식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가로수 관리) ①가로수는 주간 등 상단부 절단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 조절, 각종 공공시설물, 교통 지장목, 사고 피해목으로서 제거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가로수의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의 예방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가로수의 생장 촉진과 조기 활착을 위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비, 환토 등의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로수를 훼손시키거나 생장 피해가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
2. 기타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제14조(주민관리제 실시) ①군수는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마을의 주민·공공기관·학교·시민단체·기업체 및 상가 등의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2.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재해 등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군수에게 신고
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모든 주민은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의 가로수 유지·관리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수 관리의 위탁)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업체·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가로수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훼손자 부담금등 징수) ①군수는 도로법 제64조· 제6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원상 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군수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사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훼손자 또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장 녹화지원·장려

제17조(녹화지원)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 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일부와 기념 표지석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생물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②군수는 출향 인사·향우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등 독지가가 고향사랑 정신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나무를 직접 또는 위탁 식재하고자 할 경우 식재 장소 및 수종 선택 등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과, 참여자에 대한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녹화장려) ①군수는 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푸른고성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과 함께 푸른고성가꾸기 등의 군민 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나무·꽃 등의 조경 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술지원 및 기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념식수) 군수는 출생·입학·졸업·창업·결혼·회갑 및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군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참여) ㉠군수는 군민 또는 단체가 군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1조(가로수등의 관리대장) ①군수는 보호수·가로수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된 가로수 및 각종 조경시설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훼손자 부담금 ·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16조제3항관련)

구분	산정기준	비고
훼손자 부담금	1. 벌채, 수간 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도급공사 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수목비의 20%+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수목비의 10%+작업비	○ 도급공사설계비 및 수목비 : 세외수입 ○ 작업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원인자 부담금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도급공사설계비(굴취,이식)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도급공사설계비(굴취,이식)+관리비	○ 도급공사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조치 ○ 관리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원인자 부담금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세외수입 ○ 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주 : 1. 도급공사 설계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원가를 환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도급공사 설계비로 산정

2.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

3. 예치금 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4. 예치금 예치기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 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5.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